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나62107 판결 [가맹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2. 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522587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2,1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2022.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피고 회사’)는 112,1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2019.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고 회사는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업, 인테리어공사업 및 건축업, 음향기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이자 2020. 9. 3.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인천 중구 J 상가건물 2층(‘이 사건 상가’)에 원고가 ‘D 운서동점’이라는 상호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가맹계약’) 및 코인노래방의 인테리어공사(‘이 사건 공사’)와 노래방 설비 구입 및 설치 등을 피고 회사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가맹계약 및 추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맹계약

제3조[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의 지위]

① 계약기간 : 2018. 5. 4.~2020. 5. 3.

제11조[점포의 인테리어 설비]

③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가맹점의 설비를 의뢰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별첨A의

인테리어 설비 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후 1년간 A/S는 무상으로 한다.

제12조[기타 설비 등의 구입 및 설치]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요구품목에 해당하는 기타설비 등의 구입 및 설치를 의뢰하여야 하며 권유품목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제시한 기타설비 등의 기준과 사양에 맞추어 직접 구입하거나 별첨B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등]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추가계약

제2조[계약내용]

2. 전체 계약 금원: 139,513,000원

제3조[약정사항]

1. 본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36,853,900원
2. 목공사 시행 전(자재 입고 전) 중도금 명목으로 38,146,100원
3. 노래방반주기기 납품 예정일 10일 전 잔금 명목으로 4,513,000원
7. 착공일: 2018. 5. 10. / 인테리어공사 완료일 : 2018. 6. 27.
8. 위 7번 항의 이행완료 후에 해당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며(전기검사, 소방검사, 시군구청 실사, 사업자등록), (중략) 최대한 빠른 인허가 진행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평일기준 7일 소요).

제5조[상표권 승계]

1. 본 계약서는 공사와 그에 따른 결제 방식, 하자보수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계약서이고, 해당 매장에 대한 상표권 사용 권리와 영업지역에 대한 운영권 인정 등은 가맹계약서 제4조, 제5조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은 가맹계약서를 체결해야 사용 가능하고 보장이 된다.

제7조[특약사항]

1. 룸당 500만 원으로 책정된 전체 창업비용에는 실내인테리어공사, 각방 반주기세트, 지폐교환기, 카운터, 4채널CCTV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6. 피고 회사는 제3조 7항, 8항에 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되,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되는 일수만큼 1일당/현금 입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해서 원고에게 보상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8. 5. 29.까지 총 9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나머지 계약대금 중 4,513,000원은 추가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노래방반주기기 납품 예정일 10일 전에 지급하고, 45,000,000원은 노래방 오픈 후 매월 매출에 비례하여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2018. 6. 4. 착공하여 2018. 7. 25. 노래방 영업을 개시하기로 다시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6. 2. 이 사건 상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4.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8. 6. 4.부터 2020. 6.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는 피고 회사 측의 사정으로 계속 지체되었고, 피고 C은 2018. 7. 27. “7. 25.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대출이자에 대해서 일체 보상하고, 일 매출에 대한 금액 보상은 추후 협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 최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그 후에도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2018. 11.경 피고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사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C은 2019. 5. 13. ‘피고 C은 원고에게 2019. 5. 31.까지 공사완료 및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체보상금 및 일부 월세 등 합계 3,500만 원을 지불한다’는 골자의 형사조정이 성립하였다.

아. 이 사건 공사는 2019. 7.경까지도 완료되지 않았고, 노래방기기 등도 입고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7. 1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2019. 7. 20.까지 완공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골자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8.경 임대차계약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는 2018. 7. 25.까지 노래방 영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노래방기기 등 설비의 설치를 완료해 주어야 함에도 2019. 7.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가맹계약은 2019. 7. 20.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대금 90,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이 사건 상가 차임 합계 22,137,5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대금으로, 피고 회사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추가계약 제7조 제6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원상회복 주장에 관한 판단

가맹계약 및 그에 부수하는 창업지원 계약인 추가계약은 2019. 7. 20. 원고의 계약 해제로 모두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대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잔존 계약대금은 40,000,000원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추가계약은 이 사건 공사 및 노래방 설비 설치, 인허가 절차 이행 등에 관한 계약으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② 원고가 지급한 계약대금은 이른바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그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③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함으로써 추가계약상 의무 중 일부를 이행한 것은 사실이다. ④ 원고 역시 2019. 7. 12.자 내용증명에서 그 때까지의 공사비용을 5,000만 원 상당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공제하고 계약대금 중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80% 이상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덧붙여 추가계약상 피고 회사의 의무는 이 사건 공사뿐 아니라 노래방 설비 설치, 인허가 절차 이행 등도 포괄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진척 상황만으로 바로 추가계약상 의무 이행 정도를 가늠할 수는 없다).

2)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추가계약 제7조 제6항에서 지연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추가계약은 원고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 창업지원 업무를 의뢰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체결된 계약인 점, 가맹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계약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추가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가맹계약과 추가계약이 모두 해제되기에 이른 점, 가맹계약 제36조는 추가계약상 지연보상 규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가맹계약 제36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지연보상과 별도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참조). 갑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2018. 8.경부터 2019. 7.까지의 차임 상당액으로 합계 22,137,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2,137,5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정리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2,137,500원(= 잔존 계약대금 40,000,000원 + 손해배상금 22,1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해제 다음날인 2019. 7. 2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2019. 5. 31.까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C은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채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기일 다음날인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한미, 판사 조정환, 판사 오승이